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73
----------	-----

2023년 4월 2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03일
- 다. 상정일자 :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4월 27일 상정·수정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

- 가. 제안이유
- 한강 내 최초의 공용계류장인 서울수상레포츠센터(난지한강공원내 소재)의 설치·운영 근거와 시설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서울수상레포츠센터를 공원이용시설에 추가(안 별표1제1호)
  -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이용료를 신설하여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  
(안 별표2제1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제161조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3. 2. 9. ~ '23. 3. 2.) 결과: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4. 검토보고 요지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지 한강공원에 신규로 조성되는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와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수상레저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관련 산업 역시 커짐에 따라 서울시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 163억원을 투입하여 난지 한강공원(월드컵대교 하류 300m 지점)에 조성 중인 한강 최초의 공용계류장으로 선박 계류뿐만이 아닌 수상레저 체험 및 교육 서비스 등을 일반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상이용시설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개장에 앞서 시설 운영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 [별표1]의 공원이용시설 대상에 동 시설을 추가하고 시설 이용료 범위<sup>1)</sup>를 정하는 것임.

〈표 1〉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규모

구 분	규모	주요기능	시설 배치
수상계류장	1,006m <sup>2</sup> /69척	계류 및 체험훈련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 정박·계류 및 체험
육상계류장	4,957m <sup>2</sup> /86척	선박 보관	보관장 1(2,290m <sup>2</sup> ) 보관장 2(2,667m <sup>2</sup> )
복합지원센터 (수상구조물)	1,227m <sup>2</sup> , 2층	교육장, 편의시설	교육장, 커뮤니티룸 및 다용도실 등
		휴게공간, 매점	커뮤니티룸(휴게공간), 매점, 창고 등
	육상	전망, 휴게공간	한강 선셋 조망대 등

1) 세부적인 이용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함(조례에 규정된 이용료 범위 내에서)

-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용역<sup>2)</sup>을 진행하였으며, 전국 수상레포츠시설(공공운영 4개, 민간운영 4개)의 기초현황, 운영방식, 조직구조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서울수상레포츠센터의 조직과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적정 요금을 산정하였음.
- 세부적으로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계류시설은 21ft(6.4m) 미만 소형 선박용으로 수상 69척, 육상 86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용료 범위 산정을 위해 총 5개의<sup>3)</sup> 관련 시설을 비교하고, 5개 시설의 평균 이용금액에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시설의 상대적 매력도<sup>4)</sup>를 가중한 최종 결과를 토대로 동 조례안에 이용 요금 범위를 신설한 것임.

〈표 2〉 민간 운영 계류시설 비교

구분	크기	서울마리나		아라마리나	
		일간 이용요금	월간 이용요금	일간 이용요금	월간 이용요금
수상	5m미만	18,000원	300,000원	16,830원	287,100원
	5m이상~7m미만	22,500원	370,500원	16,830원	287,100원
	7m이상~9m미만			19,360원	328,900원
육상	5m미만	7,800원	130,000원	8,360원	143,000원
	5m이상~7m미만	11,700원	195,000원	10,120원	171,600원
	7m이상~9m미만			15,510원	262,900원

2)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운영관리 검토 용역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당)

3) 여의도 서울 마리나, 김포 아라마리나, 화성 전곡마리나, 도두마리나, 김녕 마리나

4) 시설구성도, 시설매력도, 프로그램매력도, 시설이미지, 시설규모 등 총 5개 요인으로 구성하여 평가 하였으며, 서울수상레포츠 센터의 상대적 매력도는 1.187임(비교시설은 1)

〈표 3〉 공공 운영 계류시설 비교

구분	크기	전곡마리나		도두마리나		김녕마리나	
		일간	월간	일간	월간	일간	월간
수상	5m미만	-	-	5,000원	100,000원	5,000원	100,000원
	5m이상-7m미만	-	-	10,000원	150,000원	10,000원	150,000원
	7m이상-9m미만	17,000원	280,000원	15,000원	200,000원	15,000원	200,000원
육상	5m미만	5,000원	95,000원	5,000원	100,000원	5,000원	100,000원
	5m이상-7m미만	7,000원	125,000원	10,000원	150,000원	10,000원	150,000원
	7m이상-9m미만	11,000원	185,000원	15,000원	200,000원	15,000원	200,000원

〈표 4〉 산정된 계류시설 이용요금과 조례안에 반영된 이용요금 범위

구분	크기	산정된 일간 이용료		조례안에 반영된 일간이용료
		민간운영시설	공공운영시설	
수상	5m미만	22,000원	<b>6,000원</b>	6,000~35,000원
	5m이상~7m미만	24,000원	12,000원	
	7m이상~9m미만	<b>31,000원</b>	19,000원	
육상	5m미만	11,000원	<b>6,000원</b>	6,000~18,000원
	5m이상~7m미만	13,000원	11,000원	
	7m이상~9m미만	<b>18,000원</b>	17,000원	
구분	크기	산정된 월간 이용료		조례안에 반영된 월간이용료
		민간운영시설	공공운영시설	
수상	5m미만	357,000원	<b>119,000원</b>	119,000~460,000원
	5m이상~7m미만	392,000원	178,000원	
	7m이상~9m미만	<b>416,000원</b>	274,000원	
육상	5m미만	167,000원	<b>119,000원</b>	119,000~302,000원
	5m이상~7m미만	226,000원	179,000원	
	7m이상~9m미만	<b>274,000원</b>	238,000원	

- 특히, 7m 이상 선박의 경우 계류 선석 차지 면적 및 안전관리 비용 증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출된 이용료 보다 10% 상향하여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그러나 7m 이상 선박의 경우 계류 선석 차지 면적 및 안전관리 비용 증가는 서울 수상레포츠센터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향후 물가 상승분까지 이용료 범위에 사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특히, 서울수상레포츠 센터는 6.4m 미만의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계류시설을 조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9m 이하의 선박까지 계류가 가능한 것으로 자체 판단하여 이를 이용료 범위에 반영한 것에 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무동력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카약, 카누, 딩기 요트 등으로 어린이(6~12세), 청소년(13세~18세), 성인(19세 이상)을 기준으로 8,000~48,000원, 무동력 교육 프로그램은 40,000~100,000원으로 범위를 정하고 프로그램별 세부 이용료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표 5〉 조례안에 반영된 서울수상레포츠 프로그램 이용료 범위

구 분		기준 및 이용료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성인(19세 이상)
체험	무동력	8,000~30,000원	10,000~36,000원	10,000~48,000원
	동력	20,000~50,000원		
교육	무동력	40,000~100,000원		

- 또한, ‘요트 투어 프로그램(동력)’의 경우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서울 마리나를 비롯한 수도권 시설 등 총 4개 시설<sup>5)</sup>의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 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였으며, 성인 기준 1인 20,000~50,000원 범위로 정하였음(타시설 요트 투어 프로그램 요금 현황 별첨).

- 무동력 및 동력 프로그램(체험 및 교육)의 경우도 타시설 프로그램 이용료를 근거로 적정 이용료를 산정하였고, 여기에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시설의 상대적 매력도 1.187를 가중한 최종 결과를 토대로 동 조례안에 이용료 범위를 신설한 것으로 상대적 매력도 가중치(118.7%)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한편, 한강사업본부는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이후 시설물 감정평가, 안전도 검사 및 민간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8월말~9월초 개장을 계획하고 있음.

---

5) 서울마리나, 아라마리나, 골든블루마리나, 현대요트 운영 프로그램을 조사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수상계류장이 육상계류장보다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높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수상 계류장의 이용료 범위 중 최소 요금을 상향 조정함.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73
----------	-----------

제출년월일 : 2023년 4월 2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수상계류장이 육상계류장보다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높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수상 계류장의 이용료 범위 중 최소 요금을 상향 조정하여 요금의 차이를 두  
고자 함.

## 2. 주요 골자

- 수상계류장의 일간 및 월간 이용료 범위 중 최소 요금을 상향 조정함  
(안 별표2 제1호의 표)

## 3. 참고사항 : 생략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2 제1호의 서울수상레포츠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서울 수상레포츠 센터	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1.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해당 이용료를 공고한다.  2.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당일 1인 1회(2시간 이내) 기준이며, 교육 프로그램(10명 이상 신청 시 운영)의 이용료는 1인 기준이며 교육 횟수 및 시간 등은 따로 정한다.  3.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당 일 왕복 기준의 금액이다. 다만, 계류장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 면제한다.  4.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이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7,000~35,000원	131,000~460,000원				
	육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6,000~18,000원	119,000~302,000원				
	장비보관함	1일	4,000~10,000원				
		1개월	50,000~110,000원				
		1년	280,000~420,000원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어린이 (6~12세)	청소년 (13~18세)	성인 (19세 이상)			
	체험	무동력	8,000~30,000원	10,000~36,000원		10,000~48,000원	
		동력	20,000~50,000원				
교육	무동력	40,000~100,000원					
경사면 (슬립웨이)	1일	6,000~20,000원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p>5. 다음 각 목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가. 풍수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나. 시설물 정비 등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p> <p>다. 각종 행사(국제대회, 축제, 공연 등)가 개최되는 경우</p> <p>라.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p>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1]</p> <p><u>공원이용시설(제3조제3호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공원시설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 수상 이용시설</td> <td>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기타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td> </tr> <tr> <td>나. 여의도 물빛무대</td> </tr> <tr> <td></td> <td>다.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td> </tr> <tr> <td></td> <td>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 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기타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p>[별표 1]</p> <p><u>공원이용시설(제3조제3호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공원시설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 수상 이용시설</td> <td>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그 밖의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td> </tr> <tr> <td>나. 여의도 물빛무대</td> </tr> <tr> <td></td> <td>다. 서울수상레포츨센터</td> </tr> <tr> <td></td> <td>라.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td> </tr> <tr> <td></td> <td>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 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그 밖의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서울수상레포츨센터		라.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p>[별표 1] (개정안과 같음)</p>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 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기타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 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그 밖의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서울수상레포츨센터																																													
	라.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p>[별표 2]</p> <p><u>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u></p> <p>1. 수상이용시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45%;">기 준 및 이 용 료</th> <th style="width: 40%;"></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선박</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강 르네상스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강 아라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의 선박</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여의도 물빛무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생략)	한강 아라호	(생략)	그 밖의 선박	(생략)		여의도 물빛무대	(생략)	<p>[별표 2]</p> <p><u>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u></p> <p>1. 수상이용시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45%;">기 준 및 이 용 료</th> <th style="width: 40%;"></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선박</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강 르네상스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강 아라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의 선박</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여의도 물빛무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상계류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현행과 같음)	한강 아라호	(현행과 같음)	그 밖의 선박	(현행과 같음)		여의도 물빛무대	(현행과 같음)	서울	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p>[별표 2]</p> <p><u>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u></p> <p>1. 수상이용시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기 준 및 이 용 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선박</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강 르네상스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강 아라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의 선박</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과 같음)</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여의도 물빛무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상계류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개정안과 같음)	한강 아라호	(개정안과 같음)	그 밖의 선박	(개정안과 같음)		여의도 물빛무대	(개정안과 같음)	서울	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생략)																																												
	한강 아라호	(생략)																																												
	그 밖의 선박	(생략)																																												
	여의도 물빛무대	(생략)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현행과 같음)																																												
	한강 아라호	(현행과 같음)																																												
	그 밖의 선박	(현행과 같음)																																												
	여의도 물빛무대	(현행과 같음)																																												
서울	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개정안과 같음)																																												
	한강 아라호	(개정안과 같음)																																												
	그 밖의 선박	(개정안과 같음)																																												
	여의도 물빛무대	(개정안과 같음)																																												
서울	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신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6,000 ~35,000원	119,000 ~460,000원	
육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6,000 ~18,000원	119,000 ~302,000원	
장비보관함	1일	4,000~10,000원		
	1개월	50,000~110,000원		
	1년	280,000~420,000원		
프로그램	어린이 (6세~12 세)	청소년 (13세~18 세)	성인 (19세 이상)	
	체험	무 동 력	8,000 ~30,000 원	10,000 ~36,000 원
		동 력	20,000~50,000원	
교육	무 동 력	40,000~100,000원		
경사면 (슬립웨이)	1일	6,000~20,000원		
비고	<p>1.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해당 이용료를 공고한다.</p> <p>2.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당일 1인 1회(2시간 이내) 기준이며, 교육 프로그램(10명 이상 신청 시 운영)의 이용료는 1인 기준이며 교육 횟수 및 시간 등은 따로 정한다.</p>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7,000 ~35,000원	131,000 ~460,000원	
육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장비보관함	1일	(개정안과 같음)		
	1개월	(개정안과 같음)		
	1년	(개정안과 같음)		
프로그램	어린이 (6세~12 세)	청소년 (13세~18 세)	성인 (19세 이상)	
	체험	무 동 력 과 같음)	(개정안 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동 력	(개정안과 같음)	
교육	무 동 력	(개정안과 같음)		
경사면 (슬립웨이)	1일	(개정안과 같음)		
비고	(개정안과 같음)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p>3.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당일 왕복 기준의 금액이다. 다만, 계류장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 면제한다.</p> <p>4.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이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p> <p>5. 다음 각 목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가. 풍수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나. 시설물 정비 등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p> <p>다. 각종 행사(국제대회, 축제, 공연 등)가 개최되는 경우</p> <p>라.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p>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그 밖의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라.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별표 2 제1호의 표 중 여의도물빛무대란 아래에 서울수상레포츠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서울 수상레포츠 센터	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1.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해당 이용료를 공
		7,000~35,000원	131,000~460,000원	
	육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6,000~18,000원	119,000~302,000원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고	
	장비보관함	1일	4,000~10,000원		고한다. 2.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당일 1인 1회(2시간 이내) 기준이며, 교육 프로그램(10명 이상 신청 시 운영)의 이용료는 1인 기준이며 교육 횟수 및 시간 등은 따로 정한다.	
		1개월	50,000~110,000원			
		1년	280,000~420,000원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어린이 (6~12세)	청소년 (13~18세)	성인 (19세 이상)	3.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당일 왕복 기준의 금액이다. 다만, 계류장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 면제한다. 4.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이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5. 다음 각 목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풍수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시설물 정비 등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각종 행사(국제대회, 축제, 공연 등)가 개최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체험	무동력	8,000~30,000원	10,000~36,000원	10,000~48,000원	
		동력	20,000~50,000원			
	교육	무동력	40,000~100,000원			
경사면 (슬립웨이)		1일	6,000~20,000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u>공원이용시설(제3조제3호 관련)</u></p>		<p>[별표 1]</p> <p><u>공원이용시설(제3조제3호 관련)</u></p>			
구 분	공원시설물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 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 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기타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	1. 수상 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 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그 밖의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		
	나. 여의도 물빛무대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라.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p>[별표 2]</p> <p><b>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b></p> <p>1. 수상이용시설</p>		<p>[별표 2]</p> <p><b>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b></p> <p>1. 수상이용시설</p>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생략)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현행과 같음)		
	한강 아라호 (생략)		한강 아라호 (현행과 같음)		
	그 밖의 선박 (생략)		그 밖의 선박 (현행과 같음)		
여의도 물빛무대	(생략)	여의도 물빛무대	(현행과 같음)		
(신설)		수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7,000 ~35,000원	131,000 ~460,000원	
		육상계류장	일간이용료	월간이용료	
			6,000 ~18,000원	119,000 ~302,000원	
		장비보관함	1일	4,000~10,000원	
			1개월	50,000~110,000원	
1년	280,000~420,000원				
프로그램	어린이 (6세~12세)	청소년 (13세~18세)	성인 (19세 이상)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체 협	무동력	8,000 ~30,000원	10,000 ~36,000원	10,000 ~48,000원
	동력	20,000~50,000원		
교 육	무동력	40,000~100,000원		
경사면 (슬립웨이)		1일	6,000~20,000원	
비고		<p>1.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해당 이용료를 공고한다.</p> <p>2.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당일 1인 1회(2시간 이내) 기준이며, 교육 프로그램(10명 이상 신청 시 운영)의 이용료는 1인 기준이며 교육 횟수 및 시간 등은 따로 정한다.</p> <p>3.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 당일 왕복 기준의 금액이다. 다만, 계류장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 면제한다.</p> <p>4.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이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p> <p>5. 다음 각 목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가. 풍수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나. 시설물 정비 등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p> <p>다. 각종 행사(국제대회, 축제, 공연 등)가 개최되는 경우</p> <p>라.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p>		